

수 신	언론사 귀하
발 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한택근) 문의처: 민변 쌀 대책팀장 송기호 변호사 010 6323 1409 국제통상위원장 서상범 변호사 010 8883 8128
제 목	[보도자료] 민변 쌀 관세율 공개 소송 제기 및 쌀 수입자유화 폐지 언론 설명회 개최
전송일자	2014년 6월 30일
전송매수	총 3매

보 도 자 료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은 2014년 6월 30일 정부에 쌀 관세율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하였다. 또한 민변은 정부가 내년부터 쌀 수입을 자유화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양곡관리법을 개정하고 정부가 관세 주권을 행사하여 쌀 관세율을 결정하고 올 11월 20일까지 쌀 관세법령을 입법예고하여 내년부터 시행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제 조약 상의 사후 검증 절차를 위해 내년 2월 20일까지 쌀 관세율 수정 양허표를 쌀 수출국들에게 통보하면 된다고 밝혔다.

쌀 관세율은 정부가 2015. 1. 1.부터 쌀 수입허가제를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누구나 자유로이 쌀을 수입할 경우에 부과하는 관세이다.

민변은 쌀 관세율이 몇 %로 되는가가 쌀 수입자유화 폐지의 핵심적 사항인데도 정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아 소송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민변은 2014. 6. 30. 국회 정론관에서 쌀 수입자유화 폐지 언론 설명회를 갖고, 정부가 추진하는 쌀 관세화는 양곡관리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한 입법 사항인데도 정부가 이를 숨기고 있고, 올 9월 말까지 쌀 관세율을 해외에 통보한다는 방침도 국제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민변에 의하면 쌀 수입허가제를 폐지하기 위해선 허가 없는 쌀 수입을 징역 10년 이하에 처하는 양곡관리법 제 31조 제 1항 1호를 국회가 개정해야 한다.

또한 민변은 정부 선언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쌀 수입 허가제를 폐지하는 절차는 양곡관리법의 개정과 행정절차법상의 입법예고 기간인 40일 전인 올 11월 20일까지 쌀 관세율 법령 개정 입법예고 및 그로부터 3개월 내인 내년 2월 20일까지 쌀 수출국들에게 쌀 관세율 양허표 통보라는 절차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민변은 쌀 관세율은 쌀 수출국들과 협상을 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국제 조약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결정한 후에 쌀 수출국들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쌀 수출국들은 산식 적용이 문제가 없는 지만을 점검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하였다.

이어 민변은 국회에 유전자조작 쌀 수입금지법 및 쌀 관세율 결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국회에 쌀 수입허가제 폐지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깊이 있는 심의를 요구하였다.

2014.6.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정부는 쌀 관세율과 쌀 수입허가제 폐지 대책을 즉시 공개하고, 9월 해외 통보 일정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쌀 관세화’라는 이름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쌀 수입허가제를 폐지하고 쌀 수입을 자유화한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쌀 수입허가제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양곡관리법에서 60년 이상 유지한 사회 안전망이다. 그리고 국민의 주식인 쌀 생산 기반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부는 쌀 수입 자유화를 선언하면서도 그 핵심적 내용을 비밀로 하고 절차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합리적 여론의 수렴을 막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만 보면, 첫째 아무런 국제법적 근거도 없이 마치 한국이 올 9월 30일까지 쌀 수출국들에게 쌀 관세율을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면서, 일방적 강행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또한 이른바 ‘관세화’를 하더라도 해마다 40만 8,700 톤의 외국 쌀을 의무 수입해야 한다는 기본적 사실조차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셋째, 쌀 수입허가제를 폐지하기 위해선 허가 없는 쌀 수입을 징역 10년 이하에 처하는 양곡관리법 제 31조 제 1항 1호를 국회가 개정해야 하는데도 이를 감추고 있다.

그러면서 이동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쌀 관세율을 스스로 정할 국제법적 권리마저 포기하고 마치 한국이 쌀 관세율을 결정할 권리가 없고, 쌀 수출국들과 협상을 해서 정해야 하는 것처럼 언론에 홍보하고 있다.

이에 인권옹호를 위한 법률가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다음과 같이 정부에게 9월 해외 통보 일정을 즉각 중단할 것과 쌀 관세율 및 쌀 수입허가제 폐지 대책을 즉시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게 <쌀 수입허가제 폐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유전자 조작 쌀 수입 금지법>과 <쌀 관세율 결정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청한다.

1. 한국의 쌀 관세율 결정은 국제통상법으로도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이동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마치 한국이 쌀 관세율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쌀 수출국들과 협상을 해서 정해야 하는 것처럼 언론에 홍보하고 있

다. 그러나 이는 국제법으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한국이 정할 쌀 관세율 계산 방식은 이미 세계무역기구의 <농업협정> 부속서 5에 나와 있다.(참고자료 1 참조) 한국은 이 산식을 적용해서 쌀 관세율을 스스로 결정할 국제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의 <양허표 수정과 정정에 관한 결정> 등의 국제법에 근거하여 이 관세율을 결정한 후 3개월 안에 쌀 수출국들에게 통보를 하면 된다. (참고자료 2) 쌀 수출국들은 한국이 계산 산식을 잘 적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이동필 농림수산부 장관은 한국이 쌀 관세율을 쌀 수출국들과 협상을 해서 정해야 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2. 쌀 관세율을 관세 주권과 국제법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고 이를 즉시 국민에게 공개하라

쌀 관세율 결정은 국제법상으로도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관세법 등 국내법과 세계무역기구의 <농업협정>, <양허표 수정과 정정에 관한 결정> 등의 국제법에 근거하여 쌀 관세율을 스스로 결정하고 이를 즉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3. 쌀 수입허가제 폐지 대책을 마련하여 즉시 국민에게 공개하라

쌀 수입허가제 폐지는 65년을 유지한 사회 안전망을 폐지하는 것으로, 국민의 주식과 농업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칠 중대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도 않고 공개하지도 않고 있다. 심지어 정부가 민변에 보낸 답변 공문에 의하면 대책을 마련한 문서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쌀 수입허가제 폐지는 농민과 국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중대한 국가大事이다. 즉시 대책을 마련해서 국민에게 공개하라.

4. 쌀 관세율 9월 해외 통보 일정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올 9월 30일까지는 한국이 쌀 관세율을 쌀 수출국들에게 통보해야만 하는 것처럼 언론에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제통상법적으로도 근거가

없다. 쌀 수입자유화 폐지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국내법령 개정 문제이다. 한국은 먼저 국회가 양곡관리법을 개정하고, 대통령령인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에서 쌀 관세율을 정한 뒤 40일 동안의 행정절차 법상의 입법예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한 후 3개월 내에 세계무역기구의 <양허표 수정과 정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쌀 수출국들에게 통보해 주면 된다.

결국 내년 1월 1일부터 쌀 수입 허가제를 폐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국회가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그 40일 전인 올 11월 20일까지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쌀 양허관세율을 입법예고한 후, 그로부터 3개월 내인 내년 2월 20일까지만 쌀 수출국들에게 쌀 관세율 양허표를 통보하면 된다.

정부의 9월 해외 통보 일정은 아무런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이는 국회의 양곡관리법 개정 심의 권한을 백지화하려는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부는 9월 해외 통보 일정을 즉각 중단하라.

5. 국회에 <쌀 수입허가제 폐지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한다.

쌀시장 전면개방은 농업 주무부처인 농림부(농림해양수산위원회), 통상협상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위원회), 그리고 비준동의안을 담당하는 외교부(외교통일위원회), 보완대책에 대한 재원을 만들어야 하는 기획재정부(기획재정위원회) 등 여러 정부 부처와 국회 상임위원회의 업무가 복합적으로 다뤄지는 중대현안으로서 이런 복합적 사안의 경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총괄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2월 6일 국회에 구성된 통상관계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4일 뒤인 6월 30일까지로서 쌀시장 전면개방(쌀 관세화)이라는 커다란 통상이슈를 앞둔 지금 그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면 식량주권의 마지막 보루인 쌀시장 전면개방이라는 중요한 통상현안에 대해 국회는 대처할 중요 기구를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국회에 쌀 수입허가제 폐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쌀시장 개방이라

는 중대현안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6. 국회에 <유전자 조작 쌀 수입 금지법>과 <쌀 관세율 결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한다.

미국은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TPP)에서, 일본에게 미국 쌀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 조작 쌀 검사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만일 정부의 선언대로 쌀 수입 허가제를 폐지하여 쌀 수입을 자유화하면 미국과 TPP를 추진하는 한국에게 미국은 유전자 조작 쌀 검사를 폐지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유전자 조작 쌀 수입 금지는 한국의 친환경 가족농업을 유지하는 데에 필수적 제도이므로 국회는 <유전자 조작 쌀 수입 금지법>을 제정하라.

또한 정부가 쌀 수출국인 미국과 호주와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을 추진하고 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는 관세율을 내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쌀 수출국들은 끊임없이 쌀 관세율 인하를 요구할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쌀 관세율을 결정하는 통상 협상의 체결 단계에서부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쌀 관세율 결정 특별법을 제정 할 것을 국회에 요구한다.

쌀 수입허가제 폐지 문제는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 행사 절차에 따라 농민과 국민과의 협의를 통한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부디 정부와 국회는 세월호의 고통과 슬픔 후 조금이라도 더 나아진 세상을 아이들에게 보여 주고 싶은 국민의 소망을 실현해 주기 바란다.

2014. 6.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한 택 근



민변, 쌀 수입허가제 폐지 언론 설명회 자료

2014. 6. 30.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1. '쌀 수입허가제'란 무엇인가요?

1950년에 제정된 양곡관리법은 다음과 같이 쌀 수입 허가제를 규정했습니다.

제 11조: 양곡을 수입 또는 수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1조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양곡을 밀수입한 자는 10년이하 1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쌀 수입허가제는 현행 양곡관리법에서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 31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수입한 양곡을 시가(時價)로 환산한 가액(價額)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미곡 등을 수입한 자

위 조항은 쌀을 수입하려는 자는 제 12조 제 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를 국민에게 부여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현행 고시 <통합공고> 별표의 <수입요령>에서 쌀은 '농림수산식품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했는데 한국은 어떻게 '쌀 수입 허가제'를 유지할 수 있었나요?

한국은 쌀 수입허가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장 접근 물량'이라고 하는 외국 쌀 최소 의무 수입량을 국가가 수입하기로 국제 조약에 약속하였습니다. (세계무역기구협정문 대한민국 양허표) 이 의무 수입량은 2014년 현재 연간 40만 8,700톤이며, 한국이 위 양허표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하기로 한 물량입니다. 이를 정부는 '관세화 유예'라고 말합니다.

3. '쌀 관세화'란 무엇인가요?

더 이상 양곡관리법의 쌀 수입 허가제라는 '비관세 장벽'을 유지하지 않고, 누구나 '관세'만 부담하면 외국 쌀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관세화(關稅化)'라고 합니다. 즉 비관세 장벽을 없애고 이를 관세('關稅') 구조로 전환('化')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민변은 왜 '쌀 관세화' 대신 '쌀 수입허가제 폐지'라는 용어를 사용하나요?

한국은 그동안 국회가 제정한 법률인 양곡관리법에 근거하여 쌀 수입허가제를 65년간 유지하였습니다. 이 쌀 수입허가제를 폐지하는 것이 쌀 수입 자유화의 본질입니다. 게다가 관세화

란 국내법률 용어가 아니라, 관세를 의미하는 ‘tariff’에서 유래한 ‘tariffication’의 번역어입니다.

5. 양곡관리법의 쌀 수입허가제 조항을 폐지하지 않고서는 쌀 관세화는 불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허가 없이 쌀을 수입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양곡관리법의 쌀 수입허가제를 폐지하지 않고서는 쌀 관세화는 불가능합니다. 현행 관세법상 쌀 기본 관세율이 5%로 정해져 있는데도 쌀을 자유롭게 수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양곡관리법의 쌀 수입허가제 조항 때문입니다.

일본도 1999년 4월 1일자로 쌀 수입 자유화로 전환하면서 당시 쌀 수입허가제를 규정하였던 <주요식량의 수급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34조를 1999년 3월 31일에 개정하여, 쌀 수입허가제를 폐지하였습니다. 대신 ‘쌀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부 장관이 고시한 액수에 수입량을 곱한 금액을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는 종량세 ‘관세화’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일본 중의원 제 145회 국회 본회의 1999. 3. 31. 의사록)

6. 양곡관리법의 쌀 수입허가제 조항을 폐지할 권한은 어디에 있나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법률의 개정을 국회의 권한입니다. 즉 국회의 양곡관리법 개정이 없으면 쌀 관세화는 불가능합니다.

7. 양곡관리법의 쌀 수입허가제 조항만 폐지하면 관세화가 되나요?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고시 <통합공고 수입요령>의 쌀 수입 허가제 조항을 폐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인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을 개정해서 외국 쌀에 매길 쌀 관세율을 정해야 합니다.

8. 쌀 관세율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한국이 처음으로 정할 쌀 관세율 계산식은 세계무역기구 농업협정 부속서 5에 정해져 있습니다. 1986년부터 1988년 사이의 대표적 국내 도매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인 {(국내가격 - 국제가격) ÷ 국제가격 × 100%} × 0.9에 따라 계산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가격이 50원이고 국제가격이 10원이면 쌀 관세율은 360%가 됩니다.

9. 위 산식을 적용한 쌀 관세율은 얼마인가요?

정부는 300%에서 계산 결과를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정보공개 소송을 했습니다.

정부의 용역을 받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04년 연구에서 쌀 관세율을 486%로 산정하였습니다. 국회의 의뢰를 받은 국내 민간 연구기관(GS&J 인스티튜트)는 2013년 연구에서 이를 510%로 산출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199년 4월 1일에 쌀 수입자유화를 시행하면서 종가세로 환산시 778%로 첫 쌀 관세율을 정했습니다. (킬로당 341엔의 종량세)

10. 정부가 쌀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쌀 수출국들과 협상을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쌀 관세율 계산 방식은 세계무역기구 농업 협정 부속서 5에 자세하고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11. 그런데 왜 정부는 쌀 관세율을 정하려면 쌀 수출국들과 협상을 해야 하는 것처럼 말하나요?

민변은 정부에게 국내법과 국제법을 준수하고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농민과 진심된 소통과 대화를 통해 민주적으로 진행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12. 한국 정부가 2015. 1. 1.자로 쌀 수입허가제를 폐지하려면 국내법적으로 어떤 일정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국회가 양곡관리법의 쌀 수입허가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그 이후 대통령령인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을 고쳐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상 입법예고를 해야 합니다. 이 입법예고 기간이 40일 이므로 2014. 11. 20.까지는 입법예고를 해야 2015. 1.1.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다.

13. 쌀 수입허가제 폐지에 진행되는 국제법적 절차가 있나요?

있습니다. 한국이 쌀 수입허가제를 폐지하고 쌀 관세율을 적용해서 외국 쌀을 수입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서의

한국의 <양허표>(Schedule)를 수정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즉 현행 한국 양허표는 쌀을 '관세화 유예'하고 매년 40만 8,700 톤을 수입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고 쌀 관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이 쌀 관세율을 결정하면 이는 위 양허표를 수정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세계무역기구의 <양허표의 수정과 정정 절차 규정>이 적용됩니다.

14. 한국은 어떤 일정으로 쌀 수입허가제 폐지에 적용되는 국제법적 절차를 이행하나요?

세계무역기구의 <양허표의 수정과 정정 절차 규정>은 한국이 양허표 수정의 조치를 다 마친 후(within three months after the action has been completed) 이로부터 3개월 이내에 쌀 수출국들에게 한국이 수정한 양허표를 쌀 수출국들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쌀 관세율을 입법예고하는 것을 위 양허표 수정 조치를 다 마친 것으로 보면, 한국은 양곡관리법의 쌀 수입허가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인 쌀 관세율 규정을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4. 11. 20.에 입법예고할 경우, 이 날로부터 3개월 안인 2015. 2. 20. 안에 쌀 수출국들에게 한국의 수정 쌀 양허표를 통보하면 됩니다.

15. 한국의 쌀 양허표 수정 통보를 받은 쌀 수출국들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세계무역기구의 <양허표의 수정과 정정 절차 규정>은 쌀 수출국들에게 한국의 쌀 양허표 수정 통보를 받은 후 3개월 안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한국 통보 양허표가 국제규범으로 확정됩니다.

16. 쌀 수출국들은 어떤 경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세계무역기구의 <양허표의 수정과 정정 절차 규정>은 수정 양허표가 수정 사항을 잘 반영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쌀 수출국들은 한국이 농업협정 부속서 5의 쌀 관세율 산식을 잘 적용해서 계산했는지를 검산해 볼 권한만 있을 뿐입니다.

17. 만일 쌀 수출국들의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정부는 애초 입법예고한 대로 2015. 1. 1.자로 쌀 수입허가제를 폐지하고 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쌀 수입허가제 폐지는 기본적으로 국내법적 절차입니다. 쌀 수출국들의 이의와는 관계없이 정부는 애초 입법예고한 대로 2015. 1. 1.자로 쌀 수입허가제를 폐지하고 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8. 일본의 경우는 어떻게 하였나요?

일본은 1999. 3. 31. <주요식량의 수급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1999. 4. 1.부터 일본 정부가 계산한 쌀 관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비록 쌀 수출국들의 이의 제기가 있었고 이것이 모두 정리된 때는 2000. 11. 7.이었지만, 일본은 애

초 계산한 쌀 관세율을 처음부터 끝까지 적용하였습니다.

19. 쌀 수입허가제 폐지에서 왜 국내법적 절차를 국제법적 절차보다 앞서 진행해야 하는가요?

관세율을 어떻게 결정하고 운영하는가 하는 관세주권을 국내 법으로 먼저 해결하지 않고 국제법 질서에 위탁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20. 그런데 왜 정부는 올 9월 말까지는 쌀 관세율 수정 양허표를 쌀 수출국들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말하는가요?

정부의 주장처럼 올 9월 말까지 통보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정부는 일본이 1998년 12월 21일에 쌀 관세율 수정 양허표를 쌀 수출국에 통보한 것을 참고한다고 하나, 일본은 통보 전에 자민당, 농림수산성, 농협 3자의 합의를 추진하여 1998년 12월 17일에, 자민당, 농림수산성, 일본 농협의 3자 회의에서, “쌀 특례조치의 관세조치로의 전환에 대한 3자 합의”를 이룬 후에 쌀 수출국들에 대한 통보를 진행하였습니다.

일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국회가 양곡관리법의 쌀 수입허가제를 폐지하지 않는 한, 아무리 쌀 수출국들에게 통보를 백번, 천번 한들 쌀 관세화는 불가능합니다.

만일 정부가 실제로 국내 합의없이 쌀 관세율 수정 양허표를 외국에 통보한다면 그 목적은 이를 빌미로 국내 토론을 차단

하고 제압하겠다는 것입니다.

21. 정부가 2015. 1. 1.부터 쌀 수입을 자유화하면 연 40만 8,700톤의 의무수입물량은 수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쌀 관세화’를 하더라도 한국은 연 40만 8,700톤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합니다.

22. 정부가 2015. 1. 1.부터 쌀 수입을 자유화하면 연 40만 8,700톤의 의무수입물량은 더 늘어나지 않나요?

보장할 수 없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DDA 협상에서는 의무수입물량에 대해서도 증량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면 쌀을 ‘민감 중요 품목’으로 지정한다고 해도 증량을 해야 합니다.

23. 현재 시행 중인 유전자 조작 쌀 검사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쌀 수입 허가제가 폐지되어 누구나 자유로이 쌀을 수입하는 체제가 되면 미국은 유전자 조작 검사 의무제 폐지를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이미 미국 쌀 생산자 협회는 일본을 압박해서 이 제도를 폐지시키라고 미국 정부에게 요구하였습니다.

24. 정부가 쌀 관세율을 지금 국민에게 공개하면 한국에게 손해인가요?

아닙니다. 세계무역기구 조약에 따르면 쌀 수출국들은 한국 정부가 통보한 관세율이 조약에서 정한 계산식에 맞게 계산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으로 3개월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쌀 관세율을 숨기고 있다가 쌀 수출국들에게 갑자기 알려 주어 그들을 시간 부족으로 당황하게 하겠다는 것은 국제법의 상식을 모르거나, 가짜 국제법을 내세워 국민을 속이려는 것입니다.

25. 정부가 계산한 쌀 관세율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요?

정부가 계산할 쌀 관세율은 1995년의 제1기 세계무역기구 조약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도하 개발 협상(DDA)이라는 제2기 조약에서 쌀 관세율이 어떻게 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가 가입하려고 하는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에서 쌀 관세율이 어떻게 될지도 미정입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계산한 쌀 관세율을 앞으로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마련해야 합니다. 쌀 관세율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쌀 관세율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통상 조약의 조약의 체결 전에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26. 정부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하나요?

먼저 국민 앞에 진실을 이야기하고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쌀 관세율을 공개하고, 쌀 수입허가제 폐지 대책을 마련해서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국회-농업계 3자 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일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국회가 양곡관리법의 쌀 수입허가제를 폐지하지 않는 한, 아무리 쌀 수출국들에게 통보를 백번, 천번 한들 쌀 관세화는 불가능합니다.

27. 국회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하나요?

쌀 수입 허가제 폐지는 농업 주무부처인 농림부(농림해양수산 위원회), 통상협상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 위원회), 그리고 비준동의안을 담당하는 외교부(외교통일위원회), 보완대책에 대한 재원을 만들어야 하는 기획재정부(기획 재정위원회) 등 여러 정부 부처와 국회 상임위원회의 업무가 복합적으로 다뤄지는 중대현안으로서 이런 복합적 사안의 경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총괄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 2월 6일 국회에 구성된 통상관계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4일 뒤인 6월 30일까지로서 쌀 수입허가제 폐지라는 중대 현안을 앞둔 지금 활동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국회에 쌀 수입허가제 폐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심의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관세양허표 수정·개정 절차(1980년 3월 26일자 GATT 결정문) [미국]

- 박주선 의원실 의뢰,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 국외자료과 외주번역 (영한 번역)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L/4962 28 March 1980

Limited Distribution

PROCEDURES FOR MODIFICATION AND RECTIFICATION OF SCHEDULES OF TARIFF CONCESSIONS

Decision of 26 March 1980

Recalling that the CONTRACTING PARTIES established on 19 November 1968 a procedure for the certification of changes to Schedules annexed to the General Agreement;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keeping the authentic texts of Schedules annexed to the General Agreement up to date and of ensuring that they tally with the texts of corresponding items in national customs tariffs;

Considering that, in consequence, changes in the authentic texts of Schedules which record rectifications of a purely formal character or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L/4962 28

1980년 3월 28일

한정배포

관세양허표의 변경 및 수정에 관한 절차

1980년 3월 26일자 결정

당사국이 1968년 11월 19일에 일반협정에 첨부되는 관세양허표에 대한 변경의 인증절차를 정하였음을 상기하고,

일반협정에 첨부되는 양허표의 협정 정본(正本)을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과 협정 정본이 각국의 관세에 있어서 상응하는 품목에 관한 규정과 부합되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을 고려하며,

그 결과 오직 형식적인 글자의 수정 또는 제21조, 제18조, 제24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취한 조치에 따른 변경을 기록하는 양허표 정본의 변경이 자체 없이 인증되어야 함을 고려하여,

관세양허표 수정·개정 절차(1980년 3월 26일자 GATT 결정문) [미국]

- 박주선 의원실 의뢰,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 국외자료과 외주번역 (영한 번역)

modifications resulting from action taken under Article II, Article XVIII, Article XXIV, Article XXVII and Article XXVIII shall be certified without delay;

The CONTRACTING PARTIES decide that:

1. Changes in the authentic texts of Schedules annexed to the General Agreement which reflect modifications resulting from action under Article II, Article XVIII, Article XXIV, Article XXVII or Article XXVIII shall be certified by means of Certifications. A draft of such change shall be communicated to the Director-General within three months after the action has been completed.

2. Changes in the authentic texts of Schedules shall be made when amendments or rearrangements which do not alter the scope of a concession are introduced in national customs tariffs in respect of bound items. Such changes and other rectifications of a purely formal character shall be made by means of Certifications. A draft of such changes shall be communicated to the Director-General where possible within three months but not later than six months after the amendment or rearrangement has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제2조, 제18조, 제24조,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취한 조치에 따른 변경을 반영하는 일반협정에 첨부되는 양허표 정본의 변경은 인증서 교부에 의하여 인증되어야 한다. 그 변경의 초안은 해당 조치가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사무총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양허표 정본의 변경은 양허품목과 관련하여 양허의 범위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개정 또는 재조정이 각국 관세에 도입되는 경우에 확정된다. 해당 변경과 기타 오직 형식적인 글자의 수정은 인증서 교부에 의하여 확정된다. 해당 변경의 초안은 해당 개정 또는 재조정이 각국 관세에 도입된 후 가능하면 3개월 이내, 늦어도 6개월 이내에 또는 기타 수정의 경우에는 상황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사무총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관세양허표 수정·개정 절차(1980년 3월 26일자 GATT 결정문) [미국]

- 박주선 의원실 의뢰,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 국외자료과 외주번역 (영한 번역)

been introduced in the national customs tariff or in the case of other rectifications, as soon as circumstances permit.

3. The draft containing the changes described in paragraphs 1 and 2 shall be communicated by the Director-General to all the contracting parties and shall become a Certification provided that no objection has been raised by a contracting party within three months on the ground that, in the case of changes described in paragraph 1, the draft does not correctly reflect the modifications or, in the case of changes described in paragraph 2, the proposed rectification is not within the terms of that paragraph.

4. Whenever practicable Certifications shall record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each modification and the effective date of each rectification.

5. The procedure of Certification under this Decision may be applied for the establishment of consolidated Schedules or of new Schedules under paragraph 5(c) of Article XXVI, wherein all changes are modifications or rectifica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s 1 or 2.

3.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변경을 포함하는 초안은 사무총장이 모든 당사국에 통지하고, 제1항에 규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당사국이 해당 초안이 변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수정안이 해당 항의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인증된다.

4. 실행 가능한 경우에는 인증서에는 각 변경사항의 시행일 및 각 수정의 효력발생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5. 이 결정에 따른 인증절차는 제26조제5항 (c)에 따른 통합양허표 또는 신규양허표의 확정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통합양허표 또는 신규양허표의 모든 변경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변경 또는 수정에 해당한다.

관세양허표 수정·개정 절차(1980년 3월 26일자 GATT 결정문) [미국]

- 박주선 의원실 의뢰,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 국외자료과 외주번역 (영한 번역)

6. This Decision supersedes the || 6. 이 결정은 1968년 11월 19일의 결
Decision of 19 November 1968. || 정을 대체한다.

양곡관리법

[시행 2013.9.23.] [법률 제11641호, 2013.3.22.,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과), 044-201-1815, 1816

제3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수입한 양곡을 시가(時價)로 환산한 가액(價額)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혜가를 받지 아니하고 혜가대상미곡등을 수입한 자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양곡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수출하거나 수입한 양곡을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추징한다.

[전문개정 2009.4.1.]

第145回国会 本会議 第11号
平成十一年三月三十一日(水曜日)
午前十時一分開議

○議事日程 第十一号

平成十一年三月三十一日

午前十時開議

- 第一 新東京国際空港周辺整備のための国の財政上の特別措置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内閣提出、衆議院送付)
- 第二 消防施設強化促進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内閣提出、衆議院送付)
- 第三 警察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内閣提出、衆議院送付)
- 第四 土地の再評価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衆議院提出)
- 第五 国立学校設置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内閣提出、衆議院送付)
- 第六 日本学術振興会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内閣提出、衆議院送付)
- 第七 裁判所職員定員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内閣提出、衆議院送付)
- 第八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内閣提出、衆議院送付)
- 第九 国民年金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内閣提出、衆議院送付)
- 第一〇 特許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内閣提出)
- 一一 都市開発資金の貸付けに関する法律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内閣提出、衆議院送付)

○本日の会議に付した案件

- 一、国家公務員等の任命に関する件
- 一、日程第一より第一一まで
- 一、国立国会図書館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衆議院提出)
- 一、参議院事務局職員定員規程の一部改正に関する件

○議長(斎藤十朗君) これより会議を開きます。

この際、国家公務員等の任命に関する件についてお諮りいたします。

内閣から、衆議院議員選挙区画定審議会委員に荒尾正浩君、石川忠雄君、内田満君、大林勝臣君、大宅映子君、塩野宏君及び味村治君を任命することについて、本院の同意を求めてまいりました。

これより採決をいたします。

内閣申し出のとおり同意することの賛否について、投票ボタンをお押し願います。

〔投票開始〕

○議長(斎藤十朗君) 間もなく投票を終了いたします。——これにて投票を終了いたします。

〔投票終了〕

○議長(斎藤十朗君) 投票の結果を報告いたします。

投票総数	二百三十七
賛成	二百十三
反対	二十四

よって、同意することに決しました。(拍手)

〔投票者氏名は本号末尾に掲載〕

○議長(斎藤十朗君) 日程第一 新東京国際空港周辺整備のための国の財政上の特別措置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

日程第二 消防施設強化促進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

日程第三 警察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

(いずれも内閣提出、衆議院送付)

以上三案を一括して議題といたします。

まず、委員長の報告を求めます。地方行政・警察委員長小山峰男君。

〔審査報告書及び議案は本号末尾に掲載〕

일본국회 1999. 3. 31.

설 수립하기까지 허지 가정
(찬성 142 185대 92)

1999. 4. 1.

설 수립하기까지(경제부)시작

〔南野知恵子君登壇、拍手〕

○南野知恵子君 ただいま議題となりました両法律案につきまして、文教・科学委員会における審査の経過と結果を御報告申し上げます。

まず、国立学校設置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は、新潟大学医療技術短期大学部及び鳥取大学医療技術短期大学部を廃止するとともに、昭和四十八年度以降に設置された国立医科大学等に係る職員の定数を改めようとするものであります。

委員会におきましては、看護系大学・大学院の整備方針、資質の高い看護婦等の養成のあり方等について質疑が行われましたが、その詳細は会議録によって御承知願いたいと存じます。

質疑を終局し、採決の結果、本法律案は全会一致をもって原案どおり可決すべきものと決定いたしました。

次に、日本学術振興会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は、学術の進展に寄与するため、日本学術振興会が、業務として、科学研究費補助金の審査・配分事務を行うことができるようとともに、規制緩和の一環として、余裕金の運用の方法を拡大する等の措置を講じようとするものであります。

委員会におきましては、二十一世紀における学術・科学技術振興のあり方、科学研究費補助金の審査、評価の充実のための方策、今後の科学研究費補助金のあり方等について質疑が行われましたが、その詳細は会議録によって御承知願いたいと存じます。

質疑を終局し、採決の結果、本法律案は全会一致をもって原案どおり可決すべきものと決定いたしました。

なお、本法律案に対して、附帯決議が付されております。

以上、御報告申し上げます。(拍手)

○議長(斎藤十朗君) これより両案を一括して採決いたします。

両案の賛否について、投票ボタンをお押し願います。

〔投票開始〕

○議長(斎藤十朗君) 間もなく投票を終了いたします。——これにて投票を終了いたします。

〔投票終了〕

○議長(斎藤十朗君) 投票の結果を報告いたします。

投票総数 二百四十

賛成 二百四十

反対 ○

よって、両案は全会一致をもって可決されました。(拍手)

〔投票者氏名は本号末尾に掲載〕

○議長(斎藤十朗君) 日程第七 裁判所職員定員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内閣提出、衆議院送付)を議題といたします。まず、委員長の報告を求めます。法務委員長荒木清寛君。

〔審査報告書及び議案は本号末尾に掲載〕

〔荒木清寛君登壇、拍手〕

○荒木清寛君 ただいま議題となりました裁判所職員定員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につきまして、法務委員会における審査の経過と結果を御報告申し上げます。

本法律案は、下級裁判所における事件の適正迅速な処理を図るため、裁判所職員の定員を改め、裁判官につき判事補の員数を三十人、裁判官以外の裁判所職員の員数を十九人、それぞれ増加しようとするものであります。

委員会におきましては、司法機能の充実強化に向けた裁判所の取り組み、司法制度をみずから改革する必要性、事件数の動向に基づく裁判官増員システムの抜本的見直し等につきまして質疑が行われましたが、その詳細は会議録により御承知願います。

質疑を終わり、採決の結果、本法律案は全会一致をもって原案どおり可決すべきものと決定いたしました。

なお、本法律案に対して、附帯決議が付されております。

以上、御報告申し上げます。(拍手)

○議長(斎藤十朗君) これより採決をいたします。

本案の賛否について、投票ボタンをお押し願います。

〔投票開始〕

○議長(斎藤十朗君) 間もなく投票を終了いたします。——これにて投票を終了いたします。

〔投票終了〕

○議長(斎藤十朗君) 投票の結果を報告いたします。

投票総数 二百三十九

賛成 二百三十九

反対 ○

よって、本案は全会一致をもって可決されました。(拍手)

〔投票者氏名は本号末尾に掲載〕

○議長(斎藤十朗君) 日程第八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内閣提出、衆議院送付)を議題といたします。

まず、委員長の報告を求めます。農林水産委員長野間赳君。

〔審査報告書及び議案は本号末尾に掲載〕

〔野間赳君登壇、拍手〕

○野間赳君 ただいま議題となりました法律案につきまして、委員会における審査の経過と結果を御報告申し上げます。

本法律案は、米穀等についての関税措置への切りかえに伴い、輸出入の許可制の廃止、輸入に係る納付金制度の創設等の措置を講ずるとともに、関税率の設定等を行おうとするものであります。

委員会におきましては、参考人を招致してその意見を聴取するとともに、関税措置への切りかえ決定に至る経過、関税化に伴う国内農業、国民生活への影響、譲許表の改正手続と国内法との関係、三カ国一地域の異議申し立て等の内容とこれへの対応、次期WTO農業交渉に臨む政府の基本姿勢、関税化された場合の国内対策、関税化に伴う米の輸入見通し等について質疑が行われましたが、その詳細は会議録によって御承知願います。

質疑を終了し、討論に入りましたところ、民主党・新緑風会を代表して和田理事より反対である旨の、日本共産党を代表して大沢委員より反対である旨の、社会民主党・護憲連合を代表して村沢理事より反対である旨の意見がそれぞれ述べられました。

討論を終わり、採決の結果、本法律案は賛成多数をもって原案どおり可決すべきものと決定いたしました。

以上、御報告申し上げます。(拍手)

○議長(斎藤十朗君) 本案に対し、討論の通告がございます。発言を許します。小川敏夫君。

[小川敏夫君登壇、拍手]

○小川敏夫君 私は、民主党・新緑風会を代表して、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に反対の立場から討論を行います。

まず第一に、今回の関税化措置について、十分な議論がなされていないことを指摘します。

我が国において、米は国民の食生活に欠かすことのできない最も基本的な穀物であり、その地位は将来も変わることはないと考えられます。したがいまして、米の自給は将来にわたり、我が国の食糧政策の基本でなければならないと考えられます。

今回の米の関税化措置による輸入の自由化の実施に当たっては、米が抱えるこうした基本的な位置づけを考慮し、国民の間で将来も見据えた十分な議論を積み重ねることがひとくわ重要であったと思われますが、残念ながら今回の関税化決定は余りにも唐突になされ、国民の間における議論はなかったに等しいものでした。

政府、与党、全中の三者協議による合意が成立したことをもって国民の合意がなされたという説明では、国民の納得を得られるはずがありません。農業従事者の多くは、議論に参加したことはなく、決まった結果を知らされただけだと訴えております。また、米を消費する立場の国民の声は、一体どこでどのようにくみ上げられたのでしょうか。

昨年十二月十八日に関係閣僚会議で米の関税化措置が決定されましたが、委員会における参考人質疑では、主婦連役員の参考人は、決定がなされた後の昨年十二月二十四日に初めて説明を受けたと述べておきました。今回の決定が、米を食べる側の消費者の意見は聴取すらされずになされたという、恐ろしいほどに消費者すなわち大多数の国民の声を無視したものであることに私は強く抗議をいたします。

さらに、国会はこれまで三度にわたり決議を行うなど、国民の主食であり、我が国農業の中核である米の問題について重大な関心を持って対応してまいりました。しかし、この問題の議論のため、与野党の要求により農林水産委員会が開催されたのは、三者合意がなされた日の翌日の半日のみであり、国会で十分な議論を行う時間的余裕すらありませんでした。これは国会軽視も甚だしく、極めて遺憾であります。国民の食糧問題について、今まさに新しい農業基本法による議論が始まられているのですから、その根幹をなす米の関税化については、その中で十分かつ慎重な議論を経ることが適切であったと思われます。

次に、今回の関税化措置が実行されても、真の意味での食糧農業問題の解決には結びつかない点を指摘します。

今回、国民的議論を省略して関税化を導入しても、その後の関税措置等のあり方は次期WTO農業交渉の結果によることになるもので、将来に及んで具体的に確定した内容による措置が今ここで定ま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この点について、政府の姿勢も不明確であります。

その結果、農業従事者から見れば、米の高関税が絶対的に保証されたわけではなく、牛肉の輸入自由化がたどったように、関税が順次引き下げられ、国内の肉牛生産農家が大きな打撃をこうむったことの二の舞にならないかとの不安を解消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また、消費者から見るなら、今回の措置によっては実質的にその実態は何一つ変わらない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結局は、今回の関税化措置は、生産者、消費者が求める良質な米の安定供給という、米づくり農業のあるべき姿の構築に寄与するものではないということに帰着します。

最後に、ウルグアイ・ラウンド対策費との関連について指摘します。

ウルグアイ・ラウンドに対応するため、政府は六兆百億円もの巨費を投じて事業を展開してまいりましたが、これだけの規模を持った関連対策も、公共事業を主体とした従来型の事業内容とかわりばえせず、ほとんど効果を上げていないことがあります。本対策事業はこれまでに三分の二程度が執行され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多くの稻作農家は基盤整備のための新たな負担金を課されるなどにより、以前にも増して厳しい経営を余儀なくされているのが実情であるとも言われております。こうした実情からすると、我が国農業の体質を強化するための具体的な政策が明確にされないまま、安易に関税化を認めるわけにはいかないであります。

今回の米の関税化決定について、WTO交渉との兼ね合いや、国内、国際世論を勘案するなら、その基本を全否定しようといふではありませんが、右に述べたとおり、今回の関税化決定には反対せざるを得ません。

以上をもって反対の討論といたします。(拍手)

○議長(斎藤十朗君) これにて討論は終局いたしました。

○議長(斎藤十朗君) これより採決をいたします。

本案の賛否について、投票ボタンをお押し願います。

[投票開始]

○議長(斎藤十朗君) 間もなく投票を終了いたします。——これにて投票を終了いたします。

[投票終了]

○議長(斎藤十朗君) 投票の結果を報告いたします。

投票総数 二百三十四

賛成 百四十二

反対 九十二

よって、本案は可決されました。(拍手)

142:92

[投票者氏名は本号末尾に掲載]

쌀 관세 결정에 관한 특별법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제안이유

정부가 2015. 1. 1.부터 양곡관리법의 쌀 수입 허가제를 폐지하고 쌀 수입을 자유화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국민의 주식인 쌀 농업의 유지 존속이 쌀 관세율 수준에 의해 일차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맞아 정부가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TPP),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에서 쌀 관세율의 인하를 압박 받는 협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국회에 쌀 관세율 유지를 위한 협상 계획과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쌀 관세율 수준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통상 조약을 체결할 경우, 체결 전에 미리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지금까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상협정을 서명 체결한 후, 국제 신뢰를 내 세워 사후적으로 국회의 추인을 압박하는 적폐를 시정하고, 쌀 고관세 유지를 통해 국내 쌀 농업 지속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 가. 한국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과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으로부터 쌀을 수입할 경우 적용하는 쌀 관세율의 결정을 현행 관세법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 특별법에서 정하도록 하고, 이 특별법을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제4조, 제 5조).
- 나. 쌀 관세율을 협상 대상으로 한 통상 협정 협상을 진행하는 경우 협상 계획과 진행 상황을 국회에 수시에 정확히 보고하도록 함(안 제 6조)
- 다. 나항의 통상 협정 협상에서 쌀 관세율 수준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협정 문안에 대하여는 정부의 서명 이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 8조)

쌀 관세 결정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주식인 쌀 농업의 유지를 통하여 식량 자급 및 국민 경제의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쌀 관세율의 결정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미곡”이란 양곡관리법 제 2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미곡을 말한다.
2. “국제협력 관세”란 관세법 제 73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를 말한다.
3. “협정 관세”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를 말한다.
4. “자유무역협정”이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협정을 말한다.
5. “통상조약”이란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 또는 경제 연합체에 가입하거나 다른 국가 등과 체결하는 다음 각 목의 조약 조약을 말한다.
 - 가.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 차원에서 체결되어 포괄적인 대외 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하는 조약

나. 지역무역협정 또는 자유무역협정 등 지역적 또는 양자 차원에서 체결되어 포괄적인 대외 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하는 조약
다. 그 밖에 경제통상 각 분야의 대외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국
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약

6. "통상협상"이란 통상조약의 체결을 위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
등과 하는 협상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미국 관세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한다.

제2장 미국 관세의 결정

제4조(미국 국제협력 관세의 결정) 국제기구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미국에 대한 국제협력 관세는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제 5조(미국 협정 관세의 결정)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을 원산지로 하는
미국에 대한 협정 관세는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제3장 미국 관세를 대상으로 하는 통상 조약의 체결

제6조(미국 관세를 대상으로 하는 통상 협상) ①정부는 제 4조와 제 5
조의 미국 관세를 대상으로 하는 통상 협상을 추진하는 경우, 협상
의 필요성, 국내 미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 농업 전반에 미치는 영
향 및 농촌지역사회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경제적 사회적

영향 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협상 개시 전에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 1항의 통상협상을 시작하고 진행하는 경우 협상의 내용과 경위에 대하여 정확히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7조(쌀 농업통상 자문위원회) ① 정부의 미곡 관세를 대상으로 하는 통상 협상에 자문하기 위하여 쌀 농업통상 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쌀 농업통상 자문위원회는 쌀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으로 구성하고, 국내 쌀 농업 종사자의 영농 규모, 지역, 성별, 연령별 구성을 대표하도록 하여 15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한다.

③ 정부가 미곡 관세를 대상으로 하는 통상 협상을 추진하는 경우 협상 개시 전에 쌀 농업통상자문위원회에 해당 통상 협상 계획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쌀 농업통상자문위원회의 검토 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④ 정부는 제 3항의 검토 보고서에 기재된 의견과 각 지적 사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답변과 대책을 서면으로 쌀 농업통상자문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⑤ 제 3항과 4항의 문서는 모두 국민에게 공개하여 한다.

⑥ 쌀 농업 자문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쌀 농업에 전문적 지식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사무국을 설치하며, 그 인원과 설치

방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8조(미곡 관세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통상 조약의 체결) ① 정부는 미곡 관세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통상 조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경우 조약의 체결 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정부는 제 1항의 동의를 얻어 통상 조약을 체결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체결 사실과 조약문을 보고하여야 한다.

유전자조작 쌀 안전성 평가 및 수입에 관한 특별법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제안이유

정부가 2015. 1. 1.부터 양곡관리법의 쌀 수입 허가제를 폐지하고 쌀 수입을 자유화하기로 함에 따라, 유전자 조작 쌀의 상업화의 수입이 촉진될 상황이 되었다. 이는 국민 주식과 식생활 및 농업 자연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국민 식생활 안전성과 자연 환경 보호를 위하여 유전자 조작 쌀에 대한 안전성 평가 강화 및 수입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유전자 조작 쌀의 재배 및 수입 신청이 제출될 경우, 인체 및 환경 안전성에 대한 실험과 입증 책임을 신청자에게 부여함
- 나. 유전자 조작 쌀을 재배하려는 자 및 이를 수입하려는 자에게 재배와 수입 전에 해당 종자가 재배 과정에서 자연 환경 및 일반 쌀 경작지로 유출되지 않을 방안을 마련할 책임을 부여함
- 다. 유전자 조작 벼가 유출될 경우 그에 대한 완벽한 제거와 원상 회복의 책임을 재배자와 수입자에게 부여함
- 라. 유전자 조작 쌀을 수입하거나 유통하는 자에게, 유통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비유전자 조작 쌀과 혼입되지 않도록 구분하며, 혼입시 회수할 책임을 부여함
- 마. 유전자 조작 벼 유출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이나 원상회복청구 소송에서는 유전자 조작 종자 유출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함
- 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전자 조작 종자를 유출하거나 혼입한 자는 형사 처벌과 행정벌을 부과함

유전자조작 쌀 안전성 평가 및 수입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국민 식생활의 안전과 농업 자연 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유전자 조작 쌀 안전성 평가 및 수입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전자 조작 벼와 쌀”이란 다음 각 목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벼와 쌀을 말한다.
 - 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 나. 분류학에 의한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2. “유출”이란 유전자 조작 벼와 쌀을 시설, 장치, 그 밖의 구조물을 이용하여 밀폐하지 아니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자연환경에 노출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유전자 조작 벼와 쌀의 안전성 평가 및 수입 절차 등에서는 이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한다.

제2장 유전자 조작 벼와 쌀의 안전성 평가

제4조(안전성에 대한 입증 책임) 유전자 조작 벼와 쌀을 재배하거나 수입할 목적으로 안전성 평가를 신청하는 자는 유전자 조작 벼와 쌀이 인체 및 자연 환경에 대해 무해하고 안전함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제 5조(인체 안전성 평가 방법) 제 4조의 인체 안전성 평가는 인체 안전성이 입증되었다고 판단할 충분한 기간 동안의 유전자 조작 쌀의 동물 섭취 실험 등의 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제 6조(환경 안전성 평가 방법) 제 5조의 환경 안전성 평가는 유출을 방지할 수 있고, 유출 시 회수할 있으며, 오염 환경을 원상회복할 수 있다는 통제 가능성을 입증할 충분한 실험 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제3장 유출 방지와 원상 회복 의무

제7조(유출 방지) ① 제 4조의 안전성 평가에서 승인을 받아 유전자 조작 벼와 쌀을 재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재배와 수입에 착수하기 전에 해당 벼와 쌀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고, 유출 시 회수할 있으며, 오염 환경을 원상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시도

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신고 방법 및 이에 대한 시도지사의 신고 수리 방법 등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 8조(오염 제거와 원상 회복) 유전자 조작 벼와 쌀이 유출될 경우, 이를 재배하거나 수입하거나 유통시키려는 자는 그에 대한 제거와 원상 회복 및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9조(혼입 방지와 원상 회복) 유전자 조작 벼와 쌀을 재배 수입하거나 유통시킨 자에게, 비유전자 조작 벼와 쌀과 혼입되지 않도록 구분 관리하며, 유통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혼입 시 분리하여 회수할 책임이 있다.

제4장 손해배상의무

제 10조(안전성 입증책임) 유전자 조작 벼와 쌀의 인체 유해성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유전자 조작 벼와 쌀의 재배자 수입자 유통자가 유전자 조작 벼와 쌀의 인체 안전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제 11조(유출로 인한 손해의 입증 책임) 유전자 조작 벼와 쌀의 유출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이나 원상회복청구 소송에서는 유

전자 조작 벼와 쌀이 유출되었음이 입증되면, 재배자 수입자 유통자가 상대방에게 유출로 인한 손해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5장 벌칙

제 12조(유출방지방안 비신고죄) 제 7조 제 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전자 조작 벼와 쌀을 재배하거나 수입한 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에 이하에 처한다.

제 13조(고의 유출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전자 조작 벼와 쌀을 유출하거나, 비유전자 조작 벼와 쌀에 혼입되게 한 자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에 이하에 처한다.